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04.27.)

파인만 스타신종개인MMF 5호 (펀드코드: 36840)

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파인만 스타신종개인MMF 5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단기금융(MMF))				운용 경력 년수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윤성주	1966	책임 운용인력	24	1,714	3.74	3.34	3.74	3.34	22.80
■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TI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사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p>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3.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4.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5.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6.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7.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사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17시 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매입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을 매수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방법	17시 이전: 2영업일 기준가로 2영업일 지급 17시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로 3영업일 지급 *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환매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을 환매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재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p>산정방법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p> <p>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eynma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p>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과세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 <td colspan="2">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수익자</td> <td colspan="2">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body>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파인만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03-98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 발생일	2024년 07월 11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